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1. 제안경위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2023.
5.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 6. 1. 행정자치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감액되어 2023년 수입· 지출계획이 변경됨.
- 이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¹)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가 당초 66억 9천 9백만원에서 17억 1천 1백만원 감소하여 49억 8천 8백만원으로 변경됨.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u>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재무활동)을 당초 72억 4천 2백만원에서 55억 3천 1백만원으로 17억 1천 1백만원(23.6%) 감액하여 당초 편성 대비 20% 초과 변경하고자 함.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 계획>

- 1	(단위	HH	만원)
	ᆫᄆ	=4	근건/

		(1 . 7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25,249	23,538	△1,711
전 입 금	9,600	9,60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8,899	8,899	0
예 치 금 회 수	6,699	4,988	△1,711
이 자 수 입	51	51	0

		(단	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25,249	23,538	△1,711
융 자 성 사 업 비	18,000	18,000	0
기 본 경 비	7	7	0
예 치 금	7,242	5,531	△1,711

4. 검토 의견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부족자금 17억 1천 1백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49억 8천 8백만원)에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예치금(55억 3천 1백만원)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산결과 발생된 부족재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단위: 백만원)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조정내역		
성색사업 / 단위사업 / 제구사업	당초(A)	변경(B)	증감(B-A)
재무활동(행정국 인력개발과)	7,242	5,531	<u>△1,711</u>
보전지출(공무원주거안정기금)	7,242	5,531	△1,711
여유자금예치(국내협력계정)	7,242	5,531	△1,711

※ 자료근거 :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지출계획,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3.5.30.) 재구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서는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행정국 인력개발과)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23.6%, 17억 1천 1백만원을 감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예치금 변경사항을 지출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예치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별 지출 일정을 감안하여,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최대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예치금 관리현황 (2023, 5, 31, 기준)

ㅇ 시금고 예치 현황

(단위 : 천원)

 총 액	시금고 예치금		
중 액	공공예금	정기예금, MMDA	
9,714,686	1,214,686	8,500,000	

ㅇ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금 액	기 간	이 율
공공예금	1,214,686	_	2.02%
정기예금	6,000,000	5개월	4.35%
MMDA	2,500,000	수시입출금	3.46%
합 계	9,714,686		
		_	

전문위원 경	김 정 덕 입법조사된	Y 이태기
--------	-------------	-------